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3

발의연월일: 2020. 7. 27.

발 의 자:이학영·남인순·박홍근

우원식 · 임호선 · 김경협

고용진 · 이동주 · 이해식

윤재갑 · 이장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결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타방의 경우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외국회사의 경우위 기준에 더하여 국내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 규모기준에 미달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통하여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은"을 "제1항 및 제2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이 조에서 "소규모 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 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소규모 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시장에서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거나, 국내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활용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제1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 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 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제6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을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생 략)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 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 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 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 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 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 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현행 과 같음)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 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 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 수관계인이 소규모 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 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기

③<u>제1항에 불구하고</u>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④第1項의 規定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당해企業結合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 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 터 30日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

<u>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u>				
액 또는 매출액 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 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시장에서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업을 하거나, 국내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는 등 대통령				
로 활동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1. ~ 3.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 및 제2항은</u>				
⑤ (현행과 같음)				
6				

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 ⑩ (생 략)

①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義務者가소속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중하나의 會社를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이하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代理人이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u> 설>

경우와 제2항
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에는
·.
⑦ ~ ⑩ (현행과 같음)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⑩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규정된 자산총액 또는 매출
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
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
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第69條의2(過怠料) ①사업자 또는 第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 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생략)
-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 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者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	한
	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u>구</u>
	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u>는</u>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	영
	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	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	<u>는</u>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	<u>출</u>
	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	를
	말한다.	
色	 569條의2(過怠料)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저	116
	항에 따른	
	<u> </u>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